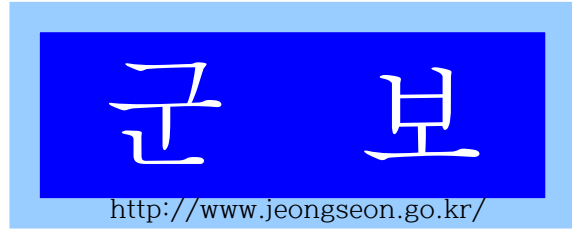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3호 2021. 8. 4.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949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 정선군 공고 제2021-952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21-964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1-965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입법예고.....23
- 정선군 공고 제2021-1001호 2021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4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949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코로나19 등 조례·규칙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내용을 포함.
- 나.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 생략 등 자치법규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의 변경
- 나. 전자심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서면심의회에 전자심의 내용 포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1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을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 중 “서면심의”를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관련 업무 담당이”로, “소속 직원중에서 기획관이 지정한다”를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 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확정하여 조례안을 군의회와 기획관에게 이송하고, 기획관은”을 “확정하고, 기획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u></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u><신 설></u></p> <p>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서면 심의</u>로 할 수 있다.</p> <p>제2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법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기획관이 지정한다.</u></p> <p>② (생략)</p> <p>제22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p>	<p><u>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u></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서면심의 (전자심의를 포함한다)</u>----- -----.</p> <p>제21조(간사 등) ① ----- ----- ----- <u>관련 업무 담당이</u> ----- -- <u>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회의록 등) ① -----</p>

개최 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조례안을 군의회와 기획관에게 이송하고, 기획관은 부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회의록 -----

--. 다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의 경우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 해야 한다.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 확정하고,
기획관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의안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심의내용	심의결과	심의 세부 내역(명)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주요내용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심의보류	
의 장	군	수						
부의장	부	군	수					
위 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 5.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정선군 공고 제2021-952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정 선 군 수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 2021.7.22. ~ 2021.8.21.(30일간)

3. 대 상 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1	스마트머니 대부·대부중개	이*오	강원정선2019-대부5	2019-4-16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7-2, 1층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등록취소
- 처분사유 : 대부업체의 소재불명 및 고정사업장 미확보

5. 공시송달내용

- 상기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됩니다.

6. 기타사항

- 본 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경제과(☎033-560-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964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2020년 제3회(2020.10.15.) 및 2021년 제1회(2021.3.30.~04.02.)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결과 반영
- 나.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직무재검토, 전형 위원신설, 급여체계 변경 등 기존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 신설(안 제4조제7항 삭제 및 안 제11조 신설)
- 나. 지도위원의 자격조건 확대(안 제5조제4항)
 - 1) 현 행 :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
 - 2) 개정안 : 각 분야의 전문예술인
- 다. 예술단원 채용에 따른 전형위원 신설(안 제6조)
-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촉연령(안) 신설(안 제7조제5항)
 - 1) 위촉연령 : 만60세 이하
- 마. 단원의 해촉사유 추가 신설(안 제8조제7항)
 - 1)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바. 급여지급체계 변경 및 위원 실비보상지급 기준 신설(안 제11조)
 - 1) 현 행 : 조례에 의한 기본급 지급
 - 2) 개정안 : 호봉제 도입
- 사. 예술단의 무료공연에 국가주관 행사 추가(안 제12조의2제2항제1호)
 - 1) 현 행 :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개정안 : 국가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

3. 관계법령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7. 23. ~ 2021. 8. 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재임기간”을 “재임(再任)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6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 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을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모집”을 “공개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모집”을 “특별전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임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모집 및 위촉)”을 “(전형 및 위촉)”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법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4항 후단 중 “2014.03.12” 를 “2014. 03. 12.” 로 한다. 제12조의2(중전의 제11조의2) 제2항제1호 중 “군” 을 “국가나 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⑤ (생 략)</p> <p>⑥ 운영위원장 ·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u>재임기간</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⑦ <u>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⑧ (생 략)</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재임(再任)기간</u>----- ----- ----- -----.</p> <p><삭 제></p> <p>⑦ (현행 제8항과 같음)</p>
<p>제5조(단원의 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u>예술단에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정선아리랑 기능 보유자로 한다.</u></p>	<p>제5조(단원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이 경우 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한다.</u></p>
<p>⑤ (생 략)</p> <p><신 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전형위원) ① <u>단원의 일반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u></p> <p>② <u>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제6조(모집 및 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② 일반 공개모집의 경우 단원은 실기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특별모집의 경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제7조(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8조·제9조 (생략)

<신설>

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

② --- 공개전형-----
-----.

③ 특별전형-----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법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제10조(급여지급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단원에게 급여와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 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성과금, 수당, 보상금,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① ~ ③ (생략)

④ 관람료는 2만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 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2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3.12.>

---. ----- 2014. 03. 12.---

제11조의2(공연료 등) ① (생 략)

제12조의2(공연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② -----

-----.

1. 군이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나 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 · 제13조 (생 략)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설립및운영조례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단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3. 단원의 급여지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정선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나. 관련 조문: 안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인건비등

- 2020년부터 적용(연봉 인상액은 용역결과 반영 적용)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임기 : 2020년~2021년(2년간)/2년단위 공개채용
- ※ 임금체계개선 용역 실시 : 2020.04.06.~07.04

나. 추계 결과: 2020~2024년까지 총 2,977백만원 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 비용(a - b)	570	579	594	609	625	2,977	
세출	국비						
	도비						
	군비	570	579	594	609	625	2,977
	소계(a)	570	579	594	609	625	2,977
세입	국비						
	도비						
	군비						
	소계(b)						

3. 관련 의견

- 가. 기타 경력환산부분 적용 전 금액으로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안 석 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조달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의존 재원	소 계(백만원, %)	570 (100%)	579 (100%)	594 (100%)	609 (100%)	625 (100%)	2,977 (100%)
	출연금	570	579	594	609	625	2,97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백만원, %)	-	-	-	-	-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백만원, %)		-	-	-	-	-	-
기 금(백만원,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백만원, %)		-	-	-	-	-	-
기 타(백만원,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합 계		570 (100%)	579 (100%)	594 (100%)	609 (100%)	625 (100%)	2,977 (100%)

2. 관련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협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안 석 군

정선군 공고 제2021-965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리랑 예술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른 단원의 구성, 급여 및 호봉, 수당 및 여비규정,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적용(안 제5조~안 제7조)

- 1) 단원의 구성 : 극→예능, 국악→기악
- 2) 상임단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적용(8급 1호봉)
- 3)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 : 연봉제 적용
- 4) 상임단원 채용시 경력환산 기준 적용
- 5) 상임단원의 수당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수당
- 6)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마련

나. 전형위원 신설에 따른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안 마련(안 제8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정비

3. 관계법령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7. 23. ~ 2021. 8. 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8),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칙 제 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급여지급 등)” 을 “(급여 및 호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는 매년 시행되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급여로써 매월 지급한다.
- ② 단원을 채용할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5에 따른다.

- 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 ③ 비상임단원의 출연료(수당)는 별표 7에 따른다.

제7조(실비보상) ①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8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 을 “제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 를 “전형위원” 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모집방법 및 채점기준)” 을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급여지급 등) <u>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한 상임단원의 연봉, 단원의 수당(출연료), 보상금, 여비 및 상임단원의 성과금의 지급기준 등은 각각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성과금은 직책별 구분에 따른 성과금에 전년도 근무평정표와 단원고과기록표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지급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는 매년 시행되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별표3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급여로써 매월 지급한다.</p> <p>② 단원을 채용할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4와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할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p> <p>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5에 따른다.</p> <p>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p> <p>③ 비상임단원의 출연료(수당)는 별표7에 따른다.</p> <p>제7조(실비보상) ①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p>

<p><u>제6조(모집방법 및 채점기준) ①</u> 조례 <u>제6조제2항</u>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u>운영위원회</u>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u>제7조 ~ 제10조</u> (생 략)</p>	<p><u>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별표 8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u> <u>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u> --- <u>제7조제2항</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u>전형위원</u>----- -----. <u>제9조 ~ 제12조</u> (현행 제7조부터 제 10조까지와 같음)</p>
---	---

관계법령 발취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선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구 성					비 고
	계	소리	극	국악	기타	
계	50	18	18	6	8	
연출감독	1				1	
작 가	1				1	
지도위원	4				4	
안 무 가	1				1	
단 무 장	1				1	
수석단원	3	1	1	1		
차석단원	3	1	1	1		
평 단 원	16	4	8	4		
비상임단원	20	12	8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구 성					비 고
	계	소리	예능	기악	기타	
계	50	18	18	6	8	
연출감독	1				1	
작 가	1				1	
지도위원	4				4	
안 무 가	1				1	
단 무 장	1				1	
수석단원	3	1	1	1		
차석단원	3	1	1	1		
평 단 원	16	4	8	4		
비상임단원	20	12	8			

[별표 2]

단원의 수당(제5조 관련)

□ 출연료 및 연습비

명 예 단 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50,000원	120,000	6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2]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상임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별표 3]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적 용 분 야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작 품 료	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	작품당	1,000~5,000	
	관현악합주곡 작곡	1곡(30분 내외)	1,000~5,000	
	독·중주곡 작곡	10분 내외	500~3,000	
	국악 편곡	10분 내외	500~3,000	
	무용 창작	10분 내외	500~2,000	
	무용 편곡	1작품	500~2,000	
객 원 출 연 료	특별출연 A급	1회	600~1,500	
	특별출연 B급	1회	300~600	
	특별출연 C급	1회	150~300	
	일반객원출연 및 연습	1일	50~120	
	※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	도안, 조명, 음향기사	1회	300~1,000	
	소품 운송, 홍보 등	1회	50~200	
	사진 촬영 등	1회	300~1,000	
기 타	원작 사용료	작품당	1,000~10,000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3]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연 봉 기 준	비 고
연출감독	40,000,000원 ~ 60,000,000원	안산시립 7조1항
작 가	35,000,000원 ~ 50,000,000원	
안 무 가	28,000,000원 ~ 40,000,000원	

[별표 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연출감독·작가·지도위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안무가·단무장·수석·차석·평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별표 4]

경력환산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경력기준	적용범위
국·공립 예술단에서 동일분야(단원)로 근무한 경력	상임 100% 비상임 50%
군복무 경력	10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100%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분야 활동경력	50%

[별표 5]

성과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직책별 구분에 따른 성과금

구 분	성 과 금	비 고
연 출 감 독	3,000,000원	
지 도 위 원	2,500,000원	
안 무 자	2,500,000원	
수 석 단 원	2,500,000원	
차 석 단 원	2,000,000원	
평 단 원	2,000,000원	
서 무 단 원	2,000,000원	

2. 성과금 지급률

구 분	지 급 률	비 고
100점 ~ 96점	100%	※ 구분은 직책단원근 무평정표와 단원고과 기록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
95점 ~ 90점	90%	
89점 ~ 80점	80%	
79점 ~ 70점	70%	
69점 ~ 60점	50%	
59점 이하	30%	

[별표 5]

상임단원제수당(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수당	수석·단무장 : 월 20만원 차석 : 월10만원	

[별표 6]

관람료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1회당 기준 시간(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소리,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극,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5,000원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10,000원

비고

1.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2.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2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3. 상기 1과 2의 할인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선아리랑극 공연의 경우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별표 6]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연출감독·작가·지도위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안무가·단무장·수석·차석·평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별표 7]

공연료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공 연 료	비 고
독창/독주	200,000원 ~ 400,000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1,000,000원 ~ 2,000,000원	연주자 5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2,000,000원 ~ 3,000,000원	“
20인 이상 30인 미만	3,000,000원 ~ 4,000,000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4,000,000원 ~ 5,000,000원	“

비고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1일 이상은 공연료와 숙식비 등 별도 협의한다.

[별표 7]

단원의 수당(제6조제3항 관련)

□ 출연료 및 연습비

명 예 단 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50,000원	120,000	6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8]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적 용 분 야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작 품 료	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	작품당	1,000~5,000	
	관현악합주곡 작곡	1곡(30분 내외)	1,000~5,000	
	독·중주곡 작곡	10분 내외	500~3,000	
	국악 편곡	10분 내외	500~3,000	
	무용 창작	10분 내외	500~2,000	
	무용 편곡	1작품	500~2,000	
객 원 출 연 료	특별출연 A급	1회	600~1,500	
	특별출연 B급	1회	300~600	
	특별출연 C급	1회	150~300	
	일반객원출연 및 연습	1일	50~120	
	※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	도안, 조명, 음향기사	1회	300~1,000	
	소품 운송, 홍보 등	1회	50~200	
	사진 촬영 등	1회	300~1,000	
기 타	원작 사용료	작품당	1,000~10,000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9]

관람료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1회당 기준 시간(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소리,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극,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5,000원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10,000원

비고

1.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2.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2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3. 상기 1과 2의 할인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선아리랑극 공연의 경우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별표 10]

공연료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공 연 료	비 고
독창/독주	200,000원 ~ 400,000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1,000,000원 ~ 2,000,000원	연주자 5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2,000,000원 ~ 3,000,000원	“
20인 이상 30인 미만	3,000,000원 ~ 4,000,000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4,000,000원 ~ 5,000,000원	“

비고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1일 이상은 공연료와 숙식비 등 별도 협의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1001호

2021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정 선 군 수

- 1. 사업명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2. 신청대상 : 정선군 소재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군 세외수입 체납액 있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보증제한업종 「별표 1」 참조

3.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5억 원
- 보증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업체 당 1회)
 -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 보증비율 : 100%
- ※ 기 대출소상공인 최대 10,000천원, 신규 최대 20,000원
- 보증기간 : 36개월, 연장 시 최대 6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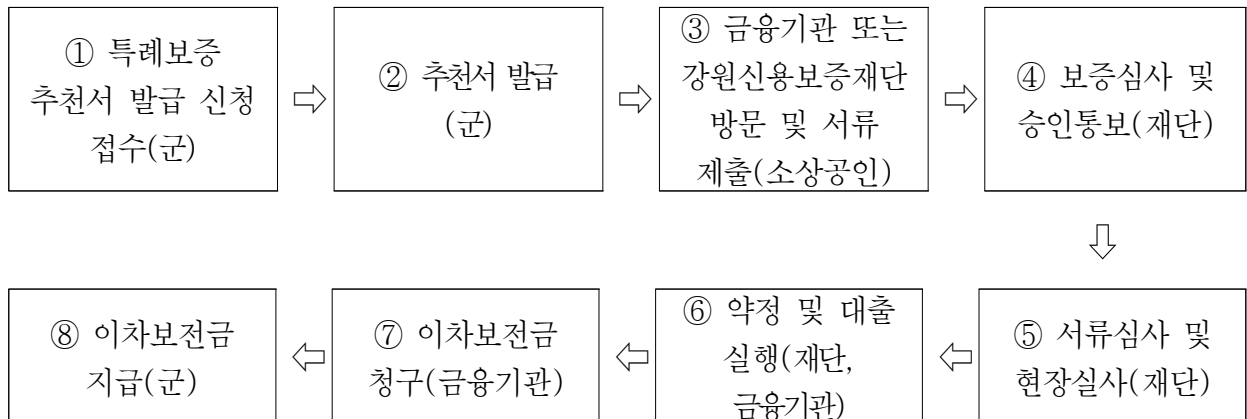
□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정선신용협동조합(정선신협)
- 대출금리 : 3.0% (고정금리)
- 이차보전율 : 2.0%
- 이차보전기간 : 최대 36개월
- 대출기간 : 36개월, 연장 시 최대 60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중단함.

5. 신청기간 : 2021. 8. 4. ~ 보증규모 5억 원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정선군청 경제과로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 및 접수 : 정선군
 - ▶ (제출서류)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특례보증 추천 신청을 위한 점검표(붙임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 (우편 또는 방문)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강원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기관 : 정선신용협동조합



7.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033-560-2440)
-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정선신용협동조합(☎ 033-563-0760)
-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31

- 붙임
1. 보증제한업종 1부.
 2.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특례보증 추천 신청을 위한 점검표 1부.
 5. 지원대상자 기준 및 확인방법 1부.

【붙임 1】

재보증제한업종(개정 2020.9.28.)

표준산업분류	업종
561 중	(삭제 2010.11.30)
5621	(삭제 2010.11.30)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중개업(2009.1.1)
46107 중	(삭제 2020.9.28.)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삭 제>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삭제 2020.9.28.)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75993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시행일 : 2020.10.1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u><삭 제></u>	<u><삭 제></u>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u><삭 제></u>	<u><삭 제></u>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2】

2021년 정선군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신 청 자

상 호 명		대표자		주민번호 (앞자리)	- *****
자택주소	(☎:)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업 종			

□ 보증요청내용

대출금액	
대출기간	
자금의 용도	

위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천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점검표

정선군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정보	- 사업자 기본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목적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운영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수집·이용·제공 동의 일로부터 1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상 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p>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받는 자 : 정선군 - 이용목적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함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동의	<p>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동의자 성명 :

(서명/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 4】

정선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을 위한 점검표

점 검 항 목	충족 여부
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 중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4회, 30일 이상 1회 계속된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④ 소상공인은(실제경영자 포함) 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에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군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붙임 5】

지원대상자 기준 및 확인방법

구 분	지원대상자 기준	확인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개인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하	NICE평가정보(주) 점수로 확인
저소득 소상공인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 기준)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사업자	장애인 복지카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